

제목: Samuel Freeman 의 <Justice and Contract>의 1장 사회계약 견해에서의 이유와 합의
요약번역자: 이한

1 사회계약 견해들은 합의라는 발상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르다. 합의의 당사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서로에 대하여 어떤 처지에 있는가? (현상태, 자연상태, 평등상태?) 그들의 의도, 능력 그리고 이해관심은 무엇이며 그들은 어떤 권리와 힘을 갖고 있는가? 무엇이 합의의 목적인가? 그 합의는 역사적 또는 비역사적인 조건으로 인식되는가? 이런 것들을 비롯한 여러 파라미터들이 상이한 방식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사회계약 전통을 일반화하여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흄스의 합의에 대한 발상은 루소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는 고티에와 뷰캐년이 롤즈와 스캔런과는 매우 다르게 합의를 생각(conceive of)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르다.

2 특수한 종류의 윤리적 견해라기보다는, 합의의 일반적 관념은 윤리학에서 정당화를 위한 틀로 기능한다. 이 틀은, 사회 규칙과 제도의 정당성은, 그것에 의해 구속되는 모든 개인들이 자유롭게 공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데 근거한다는 자유주의적 발상에 기초한다. 만일 적절하게 규정된 여건에서 합리적 개인들이 특정한 규칙 및 제도에 동의하거나 동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협동의 기초로 받아들일 만한 것임에 분명하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되었을 때, 사회계약 견해의 정당화의 힘(justificatory force)는, 합의라는 발상에는 부분적으로만 의존한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특정한 견해를 구성하는 데 들어가는 인간관과 실천이성관이다.

3 이 논문에서 나는 실천 이성의 개념을 논의하고 그것이 상이한 종류의 사회계약 견해와 가지는 관계를 논하겠다. 나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롤즈, 루소, 그리고 칸트에 대하여 종종 제기되는 비판에 대처하는 것이다. 그 비판은, 도덕적 가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정당화되어야 하는 원칙이나 제도는 전혀, 집단적 선택이나 합의의 산물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사회계약에 호소하는 것은, 이 견해들의 진정한 성격을 가리는 필요하지도 않는 카드 섞기다. 이 비판들은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정식화되어왔다. 나는 롤즈를 겨냥하여 데이비드 고티에가 제시한 버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주석1 - David Gauthier, "The Social Contract as Ideology", *Philosophy & Public Affairs* 6, no.2 (Winter 1977): 139n 또한 Gauthier's "Bargaining and Justice", in *Ethics and Economics*, ed. Ellen Paul, Jeffrey Paul and Fred D. Miller, Jr (Oxford: Blackwell, 1985). Jean Hampton 은 이와 유사하나 롤즈에 더 동정적인 논의를 "Contracts and Choices: Does Rawls Have a Social Contract Theory" *Journal of Philosophy* 77 (1980): 315-38 에서 한다. 주석 끝) 나는 (III절에서 V절까지에 걸쳐) 롤즈의 합의에 대한 발상은 걸만 그럴듯한 것(spurious)이 아니라, 실천 이성, 정당화, 그리고 자율성에 대한 그의 관념과 밀접히 묶여 있음(tied to)을 보일 것이다. 이것을 하기 위하여 나는 먼저 사회계약 견해(I절)에서 이성이 인식되는 상이한 방식을 검토하고 사회계약에 대한 고티에 자신의 버전을 살펴볼 것이다. (II절)

I. 두 종류의 사회계약 견해

4. 홉스주의적 또는 순수한 이익 기초적 견해와, 옳음에 기초한 견해 사이의 대략적 구분으로 시작해보자. {주석2- 롤즈는 그의 정치철학사 강의에서 “이익에 기초한”이라는 용어를, 인간의 선에 대한 통상적인 설명에 기초하고 있는 홉스와 같은 계약관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는 이 용어를 Joshua Cohen의 것으로 돌리고 있다. 나는 “옳음에 기초한”(right-based)라는 용어를 개인적 권리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롤즈의 옳음의 원칙의 의미에서 사용한다. 개인적 권리나 자연권에 대한 관념에 기초한 도덕관도 그러나 역시 롤즈의 것처럼 다른 옳음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롤즈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평등한 배려와 존중에 대한 자연권에 기초하고 있다는 로널드 드워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를 거부하였다. 대신에 그는 그의 입장이 이상적인 인간관과 사회관에 근거하여 작동하는 만큼 “관념에 기초한” 또는 “이상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한다. “권리, 의무, 그리고 목표는 그러한 이상화된 관념의 요소에 불과하다.” Rawls, *Collected Papers*, ed. Samuel Freema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400-401n (cited in text as CP) 주석 끝} 둘 모두 호혜성이라는 발상-사회 협동은 상호이득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발상-을 근본적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들은, 이 기본적인 발상을 특징지움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홉스주의 견해에서, 상호 이득을 위한 협동은 환원 불가능한 도덕적 요소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홉스주의 견해는, 도덕은 종속적인 개념이라서, 개인의 선행하는 욕구와 이해관심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한다. 각 개인의 기본적 욕구와 이해관심은, 어떠한 도덕관념을 참조하지 않고서도 규정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그 개인의 특정한 상태로 규정된다. 그 목적은 (1) 도덕 원칙은 개인의 우선하며 독립적인 목적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합리적 지침들 중 하나이며 (2) 우리가 그러한 원칙에 대해 갖는 어떠한 감정(sentiments)도 이 목적들에 의하여 조건화되며 (3) 모든 사람들의 선행하는 목적을 증진시키는 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각 개인들이 그들의 이해관심을 실현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행동 방침이다. 그 이해관심이 그 자신에 대한 것이거나 다른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것이건 말이다.

5 이와 같이 이해되었을 때, 홉스주의적 견해가 활용하는 협동관은 각 개인의 이득을 위해 효과적으로 조율된(effectively coordinate) 활동이다. 그 과업은, 현 상태나 비협동 기준선 상태에 비해 상호 이득이 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는 여러 개 협동 양식 중에서 안정적인 조건에서의 협동을 보장하고 모든 이들에게 받아들일 만한 제도의 유일한 세트가 존재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 견해의 주된 현대적 지지자가 데이비드 고티에와 제임스 뷰캐넌이며 그들 둘 다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주장한다.

6 옳음 기반 사회계약 견해의 주된 대변자들은 로크, 루소, 칸트, 그리고 현대의 사상가들 중에는 롤즈, 스캐런이다. 이 설명들의 공통된 특성은 그들이 그들의 논변을 주되게, 우선하는 도덕이나 “자연권”의 관념에 기초한다는 것이 아니다. (로크, 칸트, 루소는 이 가정을 하였을지 모르나 롤즈와 스캐런은 그런 가정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보다는 그 공통된 특성은 옳음과 정의는 특정한 활용불가능한 도덕적 개념(moral notions)에 호소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없다는 것이다. 이 가정은 활용된(employed) 사회적 협동관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이중적 영향을 미친다. 각 개인의 합리적 선관에 더하여, 사회적 협동이라는 발상이, 독립적 도덕적 구성요소를 갖는다. (롤즈에서는, 공정한 조건의 개념과 합당한 것의 개념에 의하여,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선천적인 도덕적 권리의 가정 assumption of innate moral rights에 의하여) 더욱이, 옳음에 기초한 견해는 인간에게, 도덕적 조건 또는 “사회적 조건으로 규정된, 기본적 이해관심을 귀속시킨다.(ascribe) 결과적으로 홉스주의적 견해와는 대조적으로 사회 관계는, 상충하는 이익들 사이의 합리적인 타협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옳음에 기초한 관념이 사회계약을 해석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대조점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가져온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사회적 정치적 관계에서 할 이유가 있는 바에 대한 설명으로서 만장일치적인 집단적 합의의 역할로 이해한다면, 이 이유들은 우리의 우선하는 특징적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해 합리적이라는 말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 독립적인 이유들의 성격은 무엇이며, 그것들은 어디서 기원하는가?

7 홉이 개진한 회의적 논제를 살펴보자. 이 논제는 도덕적 고려사항은 개인의 목적과 상황이 무엇이건 그 사람에게 행위의 이유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 Philippa Foot 은 한 때 유사한 입장을 주장한 바 있다. 그녀는 도덕 판단이 자동적인 이유 부여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방법으로 행위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석 7 Foot, *Virtues and Vices*, 154) 우리가 할 이유가 있는 바가 무엇인가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에 달려 있으며, 이 목적은 우리의 욕구, 이해관심, 애정에 의해 주어진다. 어떤 사람이 도덕적 고려사항에 근거하여 행위할 이유가 있는가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녀의 타산적인 이익이 되는가, 그녀가 자애로운 성향, 정의에 대한 사랑 또는 어떤 다른 도덕적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contingent upon) 그리하여 무도덕적으로 되어, 도덕적 요구사항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이 항상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도덕을 거부하는 이는 악랄할 지는 모르나(villainous) 필연적으로 이성애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Foot, *Virtues and Vices*, 161-162) 우리는 두 종류의 사회계약이론이 모두 상이한 방식으로 대답하고자 하는 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홉의 입장을 바라볼 수 있다. 홉스주의적인 사회계약 견해는, 그 도전 자체의 근거에 의해 이 도전에 대응하고자 한다. 그들은 내가 “행위자 중심적 견해”라고 지칭하는 이유에 대한 관념을 홉적 견해와 공유한다. (주석 9 - 내가 “행위자 중심적”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 견해에서는, 모든 이유들이 특정한 행위자의 욕구와 이해관심에 초점을 맞춘다.(center on) 그 용어는, 이기주의를 함의하려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 개인의 욕구와 이해관심의 내용은 열려 있다. 나는 넓은 범위의 견해를 망라하는(encompass)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략적인 발상은, 칸트가 가언명령에 의해 엄두에 두고 있던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Foot 이외에도 Williams, Harman, 그리고 Gauthier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이유들은 이런 방식으로 적절하게 특징지을 수 있다고 한다. 행위자 중심적 관념은 이유라는 개념을, 그들이 골라야 하는 선택지가 주어지는 고정된 여건에서, 욕구와 이해관심이 정해진 단일 행위자의 숙고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접근한다. 그리하여 이유들은, 개인으로서 행위자의 욕구와 이해관심에 의거하여 도구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이유관을 가지고서, 홉스주의적 계약 견해는, 일정한 경험적 가정에 기초하여 회의적 논변을 반박하고자 한다. 그들은 개인들이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비협동상황을 설정하며 도덕을 이 비협동적 상황에서 모든 이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협동적 규범으로 해석한다. 타인관여적 감성이나 우리의 의무감은 그렇게 되면, 기껏해야 우리 자신의 기본적 이해관심을 효과적으로 증진하는 이차적인 동기부여로 설명된다. (우리의 기본적 이해관심은 홉스에게는 자기보존과 “안락한 삶”을 위한 수단이고, 고티에와 뷰캐넌에 있어서는 효용극대화다.) 그렇다면 도덕 철학의 선도적인 문제는 무도덕적이고 비협동적인 개인에게 그

자신의 자기 과연적 이해관심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가 협동의 맥락에서 도덕적 요구사항을 꾸준히 준수하였다면 얻을 바보다 훨씬 못한 이득을 얻게 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

8 옳음 기반 계약 견해는, 우리가 자아에 초점을 두지 않은 주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흠의 전제는 받아들이면서, 사회 관계로부터 추상된 고립된 개인의 관점에서 도덕적 탐구에 접근하려는 흠스주의적 방식을 거부한다. 회의주의적 논변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모든 이유들이 특정한 개인들의 선행하는 목적을 참조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겨냥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도덕 원칙과 우리의 의무감, 합리적 선택의 원칙과 결합된 주어진 욕구와 이해관심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는 것인 반면, 여전히 이성에 기초는 두고 있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다. 이 이유관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9 우리가 선택의 여건 하에 있는 단일한 행위자의 관점에만 이유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들의 순전히 개인으로서 욕구와 이해관심을 참조함으로써 이 개념을 해석한다면, “왜 도덕적이어야 하지?”라는 회의적 질문은 묻는게 당연하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는, 특정한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고려사항을 그들이 선행하는 목적을 증진시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도구적인 종류의 것 뿐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고려사항들은 지나치게 협소하다. 그것들은 실천 이성은 단지 개인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규범적인 고려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정한 관심을 넘어서 확장되는 정당화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직관적 느낌에 아무런 자리를 남겨두지 않는다. 이 직관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유들을 달리, 사회 집단에서의 우리의 소속의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가정해보자. 우리가 사회적 맥락에서 사람들의 이유를 물어볼 때 우리는 그들의 의도와 동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채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대신에 우리의 주된 관심은 그들의 목적이 정당성이 있느냐, 받아들여진 규범 체제에 의하여 평가하였을 때 정당화되느냐 하는 점이다.

10 모든 사회 집단은 협동의 규범과, 상호작용을 규제하며 집단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특정한 관행과 절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 규범들은 행동에 대하여 받아들여진 제약만을 특정지우는 것이 아니다. 집단의 성원은 그들의 규범체제에 의거하여 서로의 행동을 평가한다. 어떤 이의 행동이 표준적인 관행으로부터 이탈하면 그들은 이 기준에 따른 비판을 받게 되며, 그의 행위를 이 기준에 의거하여 정당화할 것이 기대된다. 규범 체계는 집단의 공적 삶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특정한 규칙과 제도들이, 사람들의 욕구와 이해관심이 무엇이건 간에 그들의 행동과 목적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주석 16- 내가 “이유를 사용하는 의미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드러난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제한한 이유들은 다소간 약했다“. 그리고 ”노예제는 인간에 대한 지배를 내포하며, 인간을 재산으로 소유한다는 점은 노예제를 비난하기에 충분한 이유다.“ 어떠한 행위가 사기적이고, 강제적이거나 약속이나 헌신의 위반을 포함한다는 사실은 논변의 맥락에서 행위의 평가에 이유로서 기능한다. 정치적 논쟁에서 어떤 법이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실업을 만들며, 빈곤을 증가시키거나 국가안보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법에 반대하는 이유들을 구성한다. 이것들은 내가 ”공적 이유들“이라고 부르는 것의 예들이다. 주석 끝)

11 공적 논변으로 취급되는 것이며 공적 정당화와 비판을 구조화하는 고려사항으로 사회적 맥락에서 이유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들을 그들의 특정한 목적을 증진하고자 하는 단일한 개인에 의해 고려되는 순수히 도구적인 고려사항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의미에서 개인의 목적과 욕구를 평가하는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진 기초를 제공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채택하는 행동방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유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특정한 개인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규범적인 고려사항에 별개의 영역이 추가된다.

12 이는, 실천 이성이라는 개념에 어떤 애매함을 함의한다. 이 애매함은 우리의 개인적 숙고의 구조에 종종 반영된다. 실천적 추론은 통상적으로 (행위자 중심적 견해가 정확하게 지적하듯이) 우리의 목적을 명료하게 하고 그것들을 일관되게 만들며,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인가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일을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의 사적인 숙고에서 우리는 사회 규범이라는 배경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 규범은 그 자신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낸다. (manifest itself) 우리의 목적과 제안된 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때, 우리가 보통 직면하는 질문은 이 규범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것인가가 아니다. 그렇기보다는 그 질문은 우리의 목적과 제안된 행위가 집단 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규범의 체계에 따라 다른 이들에게 공적으로 정당화될 것인가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과 기대를 평가하고, 우리가 이미 우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증진한다고 확정한 도구적 수단을 평가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회 규범에 호소한다. 공적 정당화의 실천은 우리의 사적 숙고에 사실상 반영된다. 이런 방식으로 특정한 사회 규칙과 제도는 실천적 추론의 과정에서 특권적 위치를 차지한다. 그것들은 우리의 특정한 목적과 관심에 필수적인 이유들을 종속시키는 특수한 이유들을 제공한다.

13 사회 집단의 성인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이 (내가 부르는 용어로는) “공적 이유들”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에 따라 행위할 능력을 발전시켰을 것을 요구한다. 이 능력들은 그 액면상, 그들의 특정한 목적과 그것을 실현할 가장 효과적인 방식에 대하여 숙고하는 개별 행위자의 능력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관련된 것은 사회적 능력, 자신의 목적 추구를 상이한 종류의 규범의 요구사항에 요구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정당화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14 홉스주의적 견해는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부인할 필요가 없으며, 공적 정당화에서 이유들이 하는 역할을 부인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적 원칙은 합리적 개인의 원칙을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공적 이유들이 갖는 정당화하는 힘이 무엇이건 간에 그 이유들은 각 행위자의 더 특정한 관심사에 도구적인 관련을 맺은 덕분에 그 힘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사회 규범을 이해하고 적용하며, 우리의 행위를 그에 의거하여 정당화하는 능력은, 여전히 그 자신의 특정한 목적의 효과적인 추구에 관하여 숙고하는 각 개인의 능력에 종속적이다. 루소의 『불평등 기원론』의 주된 논지는, 이 독립적 능력을, 그것들이 지지하는 두 종류의 이유를 융합(conflation)한 홉스의 결점(shortcomings)을 보이는 것이었다.

15 루소는 홉스와는 반대로, 고립된 존재로서 인간은 “어리석고 근시안적 동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본성상 평온하며 오직 감각(sensation)과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비사회

적(asocial)이어서 그는 언어도 모르며, 이성도 갖지 아니하며, 합리적 선택을 위해 실현된 능력도 없다. 그는 그의 미래의 욕구(홉스가 “힘에 대한 끝없는 power after power” 욕구라고 불렀던 것)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관심사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이나 그의 미래에 대하여 아무런 관념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성, 언어, 타산적 관심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의 고립된 여건에서 그의 필요는 자연적 본능에 의해 전적으로 충족된다. 그의 추론 능력은 그가 협동적 환경에 진입하기 전에는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성은 사람이 사회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적응의 도구다. 자연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그의 적응 양식이 본능인 것처럼 말이다. 사회적으로 적응적인 능력으로서, 그것의 기본적 역할은 그로 하여금 사회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협동의 규범을 이해하고, 적용하며, 그에 따라 행동하며 필요하다면 고안하는 능력이다. 사람이 그의 합리적 능력을 그의 개인적 목적을 채택하고 조정하며 그것들을 실현하는 수단에 대하여 숙고하는 과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사회적 능력의 발달과 행사와 결합되어서지, 그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다.

16 루소의 자연상태는 우리가 사회에 무엇을 빚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도록 고안된 분석 장치다. 그것은 바로, 타산적인 규범과 도덕 규범 양자에 따른 추론 능력의 계발과 행사다. {주석 13 Rousseau, Discourse on Inequality, 9-10; 전통적인 사회계약 견해에서 자연상태의 역할에 대해서는 Jean Hampton, Hobbes and the Social Contract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chap 9을 보라. 주석 끝} 사회 집단의 성원으로서, 그 집단의 협동 규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이 규범들이 그 집단 내에서 공적 이유로 어떻게 기능하기를 이해하는 일은, 행위자 중심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추론 능력을 실현하기 위한 요건이다. 이것은 집단의 협동적 규범의 도덕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협동 규범은 상당히 뻘뻘해진 것일 수도 있다. (perverse) 그것은 단지 그 규범들의 별개의 기능을 드러내며, 홉스주의자가 실천적 추론의 도구적 측면을, 사회 협동과 조리정연한(reasoned) 정당화 능력을 설명하는 충분한 기초로 사용하려는 홉스주의자의 시도의 인위성을 보여준다. 이유를 욕구가 주어진 고립된 행위자만 순수히 참조하여 규정함으로써, 홉스주의적 견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동을 서로 정당화할 수 있게 하며, 사회 집단의 존속을 위한 요건이 되는 규범에 따라 목적의 선택을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이유들의 공적 역할을 무시하면서 논의를 시작한다. (start out)

17 옳음에 기초한 계약 견해를 살펴보는 한 가지 방식은, 공적 정당화에서 규범의 사회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상이한 이유관을 갖고서 시작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도덕과 정의를 이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원칙을 정식화하는 것이라면, 질문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개인으로서 그들의 주어진 목적을 기초로 하여 집단의 규범을 준수할 이유를 가질 수 있느냐가 아니다. 그렇기보다는 그 질문은, 그들이 공적인 이유의 기본적 기초를 제공하는 규범 체계를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준수할 수 있는가 또는 그들이 불평할 자격이 있는가이다. 홉스주의적 견해와는 달리, 옳음에 기초한 견해는 모든 개인들이, 그 개인의 우선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준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일련의 규칙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정의의 기본 규범은 모든 이들의 주어진 욕구와 이해관심에 도구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없다. {주석 15 - 다음 문헌들을 비교해보라.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rev,

ed, 1999), 576/505rev (cited in text as TJ, sometimes referred to as Theroy); 그리고 TM Scanlon "Contractualism and Utilitarianism," in *Utilitarianism and Beyond* ed. Amartya Sen and Beranrd Willia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105, 119 주석 끝} 이 사실은 옳음에 기초한 견해의 출발 가정에 반영되어 있다. 그들은 개인의 욕구를 주어진 것으로 다루거나,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진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 대신에 그 견해들은 무엇이 공적 합의의 공통된 기초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참조하여 규정된 우리의 정당성 있는 이해관심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사람들의 욕구와 기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일생에 걸친 사회 협동의 필수성에 비추어, 사회 규범에 부과된 요구 조건은, 어느 누구도 사회 규범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강제될 때 합당하게 반대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18 그 특정한 고려 사항은 공적 토론에서 이유로 취급(count)되며, 그 논변은 우리의 정당화 실천에 대한 주장이다. 그 자체로서 그것은 도덕 원칙의 내용은 아무것도 구축하지 않으며, 심지어 도덕 내용이 있다는 점도 확립하지 않는다. 확립되는 것(established)은 그러한 원칙을 그 위에 건설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반이다. 그 발상은 공적 이유라는 개념은, 이론 내에서 모종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옳음에 기초한 견해를 그러한 이유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은 실천 이성의 독립적인 능력을 포함한다고 가정한다. (주석 16 - 정의론에서 롤즈가 도덕 이론을 우리의 도덕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규정하며 (46=47/40-42 rev)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도덕감의 이론으로서, 우리의 도덕 능력,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정의감을 지도하는 원칙을 설명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부분을 보라. 50-51/ 44 rev) 또한 토머스 스캔론은 행위자의 능력 중 하나는 다른 이들에게 무엇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를 추론하는 능력이라고 한다. Scanlon, "The Significance of Choice", in the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Salt Lake City: University of Utah Press, 1988) 8: 173ff 주석 끝) 더 나아가, 그 견해들은 행위자들을 공적으로 정당화가능한 조건에 의거하여 다른 이들과 협동하는 데 이해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정의관의 목적은 이 능력과 이해관심에 반응하는 원칙 즉 모든 이들이 기꺼이 하는 사회적 협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받아들이는 원칙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19 문제는 이 명세사항을 충족시키는 원칙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실천적 추론을 위한 우리의 도덕 능력, 정당화에 대한 관념, 그리고 사회계약에서 그 관념들에 부여된 역할 등의 쟁점에 관하여 옳음에 기초한 견해들이 분화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다. (주석 17 - 예를 들어 로크는 공적 정당화의 궁극적인 기초를 신의 자연법의 자명함self-evidence에서 찾았다. 기본적 도덕 능력은 따라서 이 법을 합리적으로 직관하고 그로부터 추론하는 능력으로서 인식론적으로 표현된다. 칸트에게 도덕 원칙은 우리 자신을 자유롭다고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실천 이성의 구조의 일부로 이해되었다. 로크와 칸트에 있어 사회계약은 축소된 역할만을 한다. 그것은 주되게는, 현존 정치적 헌법의 정당성을 심시하는 장치였다. 그 합의는 평등한 자유라는 자연권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정되었지, 고안된 것은 아니었다. 그 자연권은 별개의 토대에서 정당화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롤즈의 사회적 합의는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왜냐하면 롤즈는 사회의 기본 제도를 설계하는 원칙을 찾는 것이지 헌법을 심사하는 원칙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을 보라. John Locke, *Two Treatise of Goverment* (1660-1662), ed Peter Laslet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그리고 Immanuel Kant, On the Common Saying That My Be Corrcet in Theory, but It Is of No Use in Practice, AK8: 297 주석 끝) 나는 나중에 볼즈 견해의 이 측면을 논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 회의적 결론의 초점이, 일단 우리가 이유들을 공적 정당화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 어떻게 변해야만 하는가를 주목해보자. 우리가 정의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위할 이유들이 있느냐 하는 것은 더 이상 단순히 정의가 우리의 현존하는 목적들과 양립가능한가 하는 질문이 아니게 된다. 그 쟁점은 남겠지만, 옳음에 기초한 견해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다. 대신에 상이한 질문이 제기된다. 정당화의 공적 기초로 기능할 수 있고 모든 개인들이 그 개인의 특정한 목적 추구를 규제하는 사회 규범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합당하게 승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련의 원칙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 말이다. 그런 원칙이 존재하는지는 열려 있는 문제다. 그러므로, 합리적 선택 원칙과 결합된(conjoined) 개인의 선행하는 욕구 및 이해관심과 독립적으로 고려되는 기초를 갖춘 도덕적 이유들이 있느냐는 열린 질문이다. 중요한 논지는 우리가 이 질문에 순수히, 분석윤리학적 토대에서 선형적으로 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덕과 이유 사이의 관계는 실질적인 도덕 이론의 질문이 된다.

20 이제, Foot의 관심사로 돌아가보자. 그녀가 말하는 이유의 의미에서, 개인의 목적이나 상황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도덕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불가피하게 되는 것은 없다는 말이 아마 옳을지도 모른다. (rationally inescapable) 그러나, 집단의 규범 체계를 인정하며 공적 논변에서 이유로서 이 규범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이해하는,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은 피할 수 없다. 그 요구사항은 집단의 모든 규범을 지지하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 자신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가장 좋은 조건이 아니고서는 다른 이들과 협동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무도덕적 인간은, 그가 얼마나 (행위자 중심적 의미에서) 합리적이건 간에, 그가 그의 선행하는 목적을 가장 잘 증진시켜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고려사항에 의해서도 납득되거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만으로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공적 이유의 어떠한 체계도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이것은 다른 이들을 그의 특정한 목적과는 독립적으로, 동등한 토대에서 그의 인정을 보증하는 그들의 고유한 요구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옳음에 기초한 계약 견해는, 정의의 도덕적 이유들이 다른 사람들의 독립적 요구를 포함한다는 가정 위에서 전개된다.

21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서로가 욕구의 독립적인 원천임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여기기란 정말로 힘들다.) 많은 부분 이러한 인정 때문에 우리는 공적으로 받아들여진 조건에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그 조건에 따라 다른 이들과 협동하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과 제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욕구의 중요성에 관하여는 Scanlon "Contractualism and Utilitarianism", 116-17.을 보라) 예외 -그러한 감성sentiment이 없는 사람들-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들의 경우에는 Foot이 다시금 옳다. 정의롭게 행동하게끔 납득시키는 데 정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할 말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이 도덕적 동기 부여의 결여는, 그의 행위가 이성애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이는 일에 사용될 수는 없다. 이 평가에 깔려 있는, 개인의 주어진 목적보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도덕적 동기를 가지며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

진 이들이 이런 동기 부여를 가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만 한다.

II. 행위자 중심적 이유들과 사회계약

22 두 종류의 사회계약 견해에서 만장일치의 집단적 합의라는 발상이 상이한 실천이성관과 갖는 관계를 검토해보자. 나는 롤즈와 고티에의 견해에 초점을 맞추어, 고티에의 『합의도덕론(Morals by Agreement)』에서 제시된 흄주의적 설명부터 검토할 것이다. 고티에의 목적은 두 가지다. (twofold) 첫째, 그는 “서구 시장 사회를, 이성과의 관계에서 그것의 이상적 성격을 표현함으로써 옹호”하고자 한다. 둘째, 도덕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성 (sociability) 및 (사랑, 우정, 그리고 정의감을 포함하는) 모든 사회적 감성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MA, 339; cf. 193)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는 근본적으로 비사회적(asocial)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사리적인(self-interested) “자연인”을 상정한다. (MA, 310) 이러한 가정과 그의 기획의 성격을 전제할 때, 실천적 이유들은, 공적 정당화에서 독립적인 사회적 역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유는 순전히 개인의 효용 최대화 같은 행위자 중심적 조건(terms)으로만 해석된다. 그리고 여기서 개인의 욕구는 “자명하지 않은 것으로”(non-truistically) 특정되거나 순수히 자기자신만을 참조하여 구체화된다. (MA, 311) 고티에는 이 사람들을 비협동적 자연상태에 자리매김하는데, 그 상태는 (로크에 처처럼) 도덕적 근거에서가 아니라, 사리에 기초하긴 하였으나(albeit on) 개인의 사유 재산과 권리가 그 정도만큼 인정되는 로크주의적인 상태다. 각자는 다른 이들이 동일하게 대응한다는 조건에서, 다른 이들에 대한 그들의 최선의 대응은 그들의 힘과 소유 재산을 평온하게 향유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일종의 흄주의적인 협약에 의하여, 개인들은 각 다른 이들의 인신의 권리와 재산권을 인정한다.

23 만일 사람들과 그들의 초기 부존 자원이 이런 식으로 인식될 경우, 상호 작용의 오직 두 양식만이 그들에게 열려 있다. (1) 적대(hostility)와 (2) 계약적 협상에 기초한 협동(MA, 319). 이에 따라, 합리적 행위자들은 그들과의 협동이 파레토 개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사람들과 계약관계를 맺게 되며, 다른 모든 이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약하고 장애가 있는 이들은 제거될 것이다. (weeded out) 사회 협동은 이 기준선의 일반적인 계약상(contractural) 확장이다. 정의는, 합리적 행위자가 그것이 파레토 개선을 약속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합의할, 시장 행위와 개인의 효용 직접 추구에 대한 일련의 제약이다. 고티에는 합리적 존재 사이의 이 제약이나 선제하는 권리를 강제할 어떠한 필요도 이싸고 보지 않는다. 흄스와는 대조적으로 그것은 고티에의 사회계약의 목적이 아니다.

24 고티에의 가정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겠다.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한결같은(uniform) 공적 규칙인 사회계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사회(그리고 필요하다면 강제적 사회)가 로버트 노직의 견해에서처럼 일련의 사적 계약으로부터 발생하지 않는가? 고티에는 시장 실패와 외부성의 문제를 대처할 집단적 합의에 호소한다. 그의 계약은, 재산을 소유한 효용극대화자들이, 시장의 비효율성을 교정하는 원칙들에 합의하는 이상화된 경제적 협상으로 기술된다. 이 원칙이 없다면 합리적 행위자는 시장 결과와 분배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들은 노직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노직은 사회질서의 기초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드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28 고티에는 사회계약을 정당화하는 호소로는 그의 이유관과 인간관에 관만이 오직 접한한 기초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는 루소와 롤즈의 견해는, 진정으로 계약론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롤즈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호소는 걸만 그럴듯한 것(spurious)라고 한다. 진행된 도덕적 과정이 롤즈의 견해 뒤에서 진정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원칙들이다. “그 이론은 진정한 성격은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원칙의 근거를 물을 때 드러난다.”

26 고티에의 반론은 로널드 드워킨의 반론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드워킨은, 롤즈의 합의는 실제의 합의가 아니므로, 그 합의는 구속력과 중요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롤즈의 합의라는 발상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그것의 가상적인 성격에 대한 반론이다. 그 자체로 그 반론은 윤리학에서 가상적인 결정절차의 활용 모두에 적용된다. 롤즈의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고티에, 칸트, 그리고 이성적 관망자 이론 모두에 대해서 말이다. (내가 아래에서 논의할) 이 반론에 대한 간략한 답은,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는 발견적이라는(heuristic) 것이다. {주석 27 - 드워킨의 반론에 대하여는 Ronald Dworkin, *Taking Right Serious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chap. 6. sec I을 보라 주석 끝} 드워킨의 반론은 부분적으로 수사적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는 원초적 입장이 평등의 요구사항을 명료하게 하는 “강력한 방법(mechanic)”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드워킨 역시 사회가 제공해야 하는 사회적 보험의 적절한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불확실성 여건 하에서의 가상적 보험 선택에 호소한다는 사실도 관련이 있다. 롤즈의 가상적 선택이 구속력이 없다면, 드워킨의 것은 어떻게 구속력이 있겠는가? 드워킨의 반론에 대한 롤즈의 대답은 IF; 236ff를 보라. 롤즈가 반성적 평형의 “소크라테스적” 성격에 관하여 언급한 것을 비교해라. 그것은 자기 검토에 의해 형성되는 행위를 지도하는 원칙의 연구에 특징적인 개념이다.“(TJ, 48-49/ rev에서는 빠져 있다) Joshua Cohen, “Democratic Equality” *Ethics* 99 (1989): 750-751도 보라. 주석 끝}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어떤 직관적 발상과, 우리를 헌신케 하는 공적 추론을 형성하는 확고히 견지되는 도덕적 확신의 결합된 힘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 그것은 사회과학에서 최선의 이론의 일부이며, 이 이론적 구성물과 일관된 안정적 정의관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고티에가 주장하는, 실천적 이유관과 인간관으로부터 작동한다. (operate from) (MA, 8)

27 롤즈 견해에서 합의의 역할을 논의하는 배경을 살펴보기(lay) 위하여, 고티에의 설명에서 특정한 특성에 더 자세히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위자 중심적 이유가 행위자가 사회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점은 전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사회계약이론가들이 그러듯이) 정의와 사회적 협동은 이성에 기초를 둔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행위자 중심적 견해에 따르면, 사회 협동과 사회적 이득과 부담의 분배를 결정한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협동 아닌 상호작용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가정을 상정하지 않는 일은 어렵게 된다. (it is hard to resist an assumption) 왜냐하면 그 그림이 서로 상이한 목적을 가지고서 협동하는 개인의 이득을 비교하게 되는 기준선을 제공하고, 개인의 고유한 주어진 목적을 증진하는 협동 양식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평가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계는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상충하는 이해관심들 사이의 계약론적인 타협으로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홉스주의의 일부 형태를 향한 이 특징적 경향은, 사회적 질문에 적용되었을 때 행위자 중심적 견해의 특성을 갖게 된다.

28 롤즈에게는 협동의 이득과 부담을, 협동이 없는 상호작용과 비교할 여지가 없다. 자연상태 비슷한 것은 그의 견해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롤즈가 이야기하듯이) 비협동은 우리에게 실행가능한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에 내재된 “받아들이지 않으면 떠나라”라는 태도는, 사회적 관계의 모형으로는 부적합하다. 그것은 롤즈의 합의의 더 특별한 특성을 설명해주지 않는다. 여기서, 고티에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큰 한계를 갖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고티에는 사회계약을 이상화된 경제적 협상으로 생각한다.(conceive of) 그의 비협동 기준선에 비추어, 그 발상을 철저히 밀고 나가는 데 필요한 선제하는 주장을 위해서는 어떤 비계약적인 기초가 제시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절대적 재산권, 계약론적 협상, 가격 체계와 규제되지 아니한 시장거래, 또는 강제와 사기에 대한 금지에 대해서는 정의나 사회계약에 의한 어떠한 정당화도 없게 된다. 이 규칙과 제도들 중 어느 것도 상호 동의에 근거하지 않는다. 고티에는 이 결정적인 분배 기제와 구축하는 요구들을 협동의 형태로 보지 않는다. 그렇기 보다는 그것은, 인간의 자연상태를 규정하거나 자연 상태의 확장이다. (주석 29- “시장 자유는, 로빈슨 크루소가 향유하는 자연적 자유의 확장으로 인식된다” (MA, 276: MA, 90도 보라. 주석 끝))그것들은 그의 사회계약의 산물이 아니라 필수적 여건이다. (cf, MA. 222, 295) 정의 원칙에 대한 합의는 자연적 분배 제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만을 다룬다.

29 그러나, 고티에의 당사자들이 그들의 재산권 주장을 논의를 받치는 밑기둥으로 쓰고 (staked) 나서기 아니라, 이보다 훨씬 이전인 지적 존재로서 되고 나서 곧바로 모여 원칙들에 합의하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럴 경우 그들은 고티에가 규정한 제한된 원칙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에 대해 합의를 해야만 한다. 그들은 재산권이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그리고 그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 최초 취득과 이전에 관한 주장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교환 증여 그리고 상속의 요건 등 많은 것들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들이 그러한 합의를 이룬다면, 그것은 고티에의 견해에서, 재산, 시장 등등의 형태로 귀결하는 협동 제도를 낳을 것인가? 어떤 경우든, 그의 당사자들은, 비계약적인 근거에서 고티에가 주장한 것과 상당히 다른, 재산과 분배를 규정하는 원칙을 인정할 것이다. 더 이른 시점의 합의의 가능성이 보여주는 것은, 고티에 계약의 목적과 결과는 역사적 여건, 그 합의가 체결된 시점이 그 자연상태라는 점에, 의존하는 특이한 것임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이것은 그의 사회적 협동 개념이 이러한 우연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30 나는 여기서 고티에의 당사자들이 그 이전 시점에 협상을 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예를 들어 그들의 자연적 재능에 기초하여)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 체결 시점은 자의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협동적 기준선의 시점으로 무엇을 고르건 협동은 항상 상호 이득이 될 것이며, 합의가 발생하는 시점은 협동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연한(fortuiting) 여건과, 자연상태에서의 결정이 정의에 대한 고티에의 설명의 내용을 결정한다

31 그렇다면, 고티에가 자연상태를 설정하고, 사회계약을 최초 부존 재산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이상화된 협상으로 인식하는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이 제도들이, 그에게는 발생할 수 없는 사회적 합의에 의거하여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지, 그러한 정당화가 가능한 한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그런데 바로 이 쟁점이, 롤즈가 사회계약에 관한 그의 판본으로 다루고자 하였던 것이다. 재산, 계약, 시장 그리고 다른 형태의 이전(선물, 유증bequest, 상속, 과세 등등)을 롤즈는, 많은 상이한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는 사회제도로 보았다. 그들이 개별적으로 고안되고 하나의 사회제도로 결합되는 방식은 개인들의 성품, 그들의 능력의 발달, 그리고 그들의 욕구, 계획 그리고 미래 전망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며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하여 미치는 이 심층적인 영향에 비추어 볼 때, 롤즈에게 사회정의의 첫째 질문은 이 사회의 기존 제도를 설계하는 적합한 원칙은 무엇인가이다. 롤즈는 우리가 이 질문에 관하여 중요한 관련을 갖고 있는, 공적 삶에서 이유로 받아들이는 것에 합의된 비도구적인 원칙이 존재함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32 만일 우리가, 고티에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제도의 적절한 설계에 관한 질문으로 정의의 문제를 이해한다면, 그리고 사회계약을 그 질문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한다면, 그 합의의 구조와 중대성은, 고티에의 견해에서 부여된 것과는 놀라울 정도로 달라짐에 틀림 없다. 우선, 그 관점에서 제도를 평가하고 원칙을 결정하는 적합한 관점이 특정한 형태의 사유 재산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비협동적 자연상태라는 발상은 전적으로 부적절한(out of place) 것이다. 둘째로, 이상화된 경제적 협상이 사회 합의의 적절한 모델이라는 발상 역시 포기되어야(drop out of view)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욕구, 요구, 그리고 기대에 관한 이 종류의 합의와 정의의 정당성 있는 범위가, 우리가 관심을 갖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셋째, 절대적 재산권, 규제되지 않는 거래 등등에 이해관심을 갖는 종류의 사람은 이 제도들이 문제되지 않는 사람인 고티에의 합리적 소유자(appropriator)들과는 매우 상이할 것이다. 롤즈의 당사자들은, 그들이 우연히 가지게 된 어느 욕구에 따라서 행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합당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그리고 그에 근거하여 행위함으로써 그들의 최종 목적과 욕구를 통제하고, 수정하며,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스스로를 이해한다. 이 능력과 그들의 이해관심에 미치는 사회 기본 제도의 영향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제도가 어떻게 고안되느냐에 관하여 기본적인 관심을 갖는다. 롤즈의 당사자들은 제도들이 그들의 축적욕에 응한다는 발상으로는 만족하지 않으며, 이 제도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추론 능력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지, 이 제도들을 지지하는 원칙들이 그들과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적 정당화의 기초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심층적인 이해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석 30- 롤즈는 적어도 암묵적으로, 고티에가 논한 일련의 제도들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본다. TJ. sec 12를 보라. 공지성 조건에 비추어보면, 사회에서 처지가 나쁜 사람들은, 파레토 효율성에 따른 그 소유권리와 기여를 규정하는 재산과 분배의 체계를 합당하게 받아들이고 지지할 수 없다. 특히 파레토 효율성 원칙은 사실상 모든 분배와 양립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관심은, 롤즈가 경제적 협상과 파레토 효율성을 분배의 주된 방식으로 거부했다는 점이 아니라, 그의 사회적 합의 모델로서 거부했다는 점에 있다. 주석 30 끝)

33 롤즈의 합의도 고티에의 합의도 가상적이다. 그러나 고티에의 합의와는 달리, 롤즈의 합의는 비역사적이다. 그 합의는 원상태나 자연상태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처

지, 능력, 특정한 목적, 현존하는 권리, 기타 그들 자신의 역사나 입장 등 모든 것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추상된 개인을 요구한다. 롤즈에 대한 고티에의 반론의 요지(gist)는 비역사적 계약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같은 말인, 기본 구조를 구성하는 사회제도에 관한 진정한 사회적 합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변은, 고티에가 사회계약을 본질적으로 상충하는 이해관심 및 선재하는 재산에 대한 주장을 하는 개인들 사이의 이상화된 협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것은 합의라는 발상에 대한 매우 제한된 (그리고 아마도 지나치게 법률화된) 해석이다. 그것은 모든 사회계약 견해에 깔려 있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에 대한 해석의 범위에 심각한 한계를 둘 뿐만 아니라, 정의와 협동을 과도하게 협소한 개념으로, 마치 그 개념들을 사적 소유제의 시장 경제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만 관계되는 것으로 다룬다.

34 그러한 협소한 해석의 결과는, 고티에의 사회계약관에서는, 사회세계에 대한 집단적인 결정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마치, 고티에의 행위자들이 살아가며 그들의 목적을 설정하는 사회의 종류는 그들의 집단적인 통제 바깥에 존재하는 힘들에 의해 부과된다고 하는 것과 같다. {주석 32- 내가 여기서 간략히 언급allude to만 할, 롤즈가 기본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다른 이유는, 고티에의 잘못된 주장에 의해서 제기된다. 고티에는 롤즈가 개인의 그들의 사회와 사회 생산성에 따른 기여에 따라 여하한 보상을 받는 것도 거부한다고 주장한다. (MA, 248-50) 고티에의 논변은 주석 25에서 제시된 깔려 있는 전제 (한계생산성 이론)에 의해 인도된다. 즉, 사유재산을 생산수단으로 보고 그의 한계생산으로 측정된 기여에 따라 각자에게 분배하는 것 말이다. 그러나 그 내부에서 기여가 이루어지는 사회제도와는 독립적으로는, 개인의 사회에 대한 기여와 보상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에 관한 어떠한 잘 규정된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소유자로서 무엇인가를 생산하거나 무엇에 기여한다는 것은 단지, 특정 제도가 사물에 대한 권리와 권한을 할당하는 방식에 따라 나오는 제도적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기본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롤즈의 논지는, 자격과 기여를 규정하는 상이한 제도 체계를 평가하고 그 중 선택할 공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일 뿐이다. (cf, TJ, sec 47-48) 주석 끝} 그의 행위자 중심적 이유관(계약의 전제 조건과 사람들의 최종 목적의 자기 중심적 내용에 관한 그의 가정에 반대되는) 으로부터 어느 정도나 이러한 것이 도출되느냐에 관한 별개의 질문인 것이다. 행위자 중심적 견해는 궁극적으로 특정한 욕구와 이해관심을 합리적 평가 바깥에 있는 주어진 것으로 다룬다. 동시에 그렇다면 그들은 사람들의 주된 목적(primary ends)에 깔려 있으며 그 목적을 지지하는 배경적 조건을 합리적인 평가 바깥에 있는 것으로 다루는 셈이다.

35 요약하자면, 롤즈의 사회계약이 고티에의 의미에서 어떠한 종류의 협상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롤즈의 견해에 깔려 있는 질문이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어진 개인의 목적(실제의 것이건 전사회적인 것이건) 각자가 그것을 준수하는 행위자 중심적 이유가 있는, 단일한 규범 세트가 존재하는가? 롤즈에게 있어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자신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보는 관념에 비추어, 개인들이 서로에게 그들의 추구대상을 그들의 자아 관념과 일관되게 정당화할 수 있게 하는 공적 추론의 체계의 기초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가지는 목적과 행위자 중심적 이유를 결정하는, 기본적 사회제도를 그 원칙은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가? 기본구조에 대한 롤즈의 합의의 초점은, 공적 이유관과 그 독립성에 대한 그의 관념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무엇을 공적 이유들로 받

아들이며, 공적 이유의 체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무엇을 수용할 수 있는가는 각 개인의 선행하는 관심사를 합리적으로 증진시키는 일로 환원될 수 없다

III. 공적 이유들과 사회 합의

36 그러나 그의 질문에 대한 롤즈의 대답은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이야기하는 것을 여전히 보증하는가? 나는 적어도 세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라는 이상이 롤즈의 견해에서 기능한다고 논할 것이다. 첫째 방식은 그가 활용하는 (이 절에서 논의되는) 인간관으로부터 나온다. 두번째 방식은 그의 정당화에 대한 실천적 관념에 함의되어 있다 (sec. IV) 그리고 셋째는 롤즈의 자율성에 대한 칸트적 설명에 의해 알 수 있다.

37 롤즈의 이론은,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적 인간관을 구체화함으로써 사회계약에 도달한다. 사회는 상호 이득을 위한 공정한 협동의 체계라는 발상에서 시작하여 상이한 선관을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의 사회 협동의 조건은 어떻게 구체화도리 수 있는가? 그들의 자아관(self-conception)에 비추어, 이 조건들은, 협동하는 개인들과는 별개의 더 상위의 도덕적 권위(예를 들어 신이나 선행하며 독립적인 가치의 도덕질서-자연권 같은-)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 공적 이유들의 원천이 상이한 목적과 세계관을 가진 자유로운 개인들이 동의할 수 없는 요소를 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원칙을 결정하는 가장 적합한 방식은 그들의 자아관과 각 개인의 고유한 선관에 비추어 협동하는 사람들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롤즈는 주장한다.

38 이것은 롤즈의 견해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발상의 첫번째 기능이다. 그것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으며, 스스로를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이해하는 상이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공적 정당화의 기초로 기능할 수 있는 협동의 조건을 규명하는 방식이다. 여기까지는 고티에의 반론과 관련되어, 별 문제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고티에는, 롤즈 그 다음 더 나아가, 합의에 부과되는 도덕적 근거의 성격과 범위를 구축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자율보고 평등한 사람들은, 사회의 기본구조의 정의와 그것에 의하여 그들의 이익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양자 모두에 관하여 고차적인 이해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구체화되므로, 현존하는 조건으로부터 적절하게 독립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 관점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자연 상태에 의하여 규정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연상태의 우발적인 우연성 역시 합의의 목적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롤즈는 이제는 익숙해진 관점인 원초적 입장을 구체화하여 기본구조에 대한 공정한 합의라는 발상을 확장시킨다. 무지의 베일은 엄밀한 평등의 표현이다 (CP, 337) 베일 뒤의 당사자들은 그들의 특별한 목적, 능력, 또는 그들의 재능이나 상황에 대한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티에가 말하는 의미에서 어떠한 협상도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 (TJ, 139/ 120 rev) 그러므로, 합의되는 원칙이 사회에서 각자의 시작 위치를 개선하리라는 어떠한 보증도 없으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 이것이 고티에의 반론의 기초다. 롤즈의 합의는, 경제적 협상 위에서 모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롤즈의 평등의 엄격성이 경제적 협상을 불가능하게 한다. (stringency)

39 고티에의 반론이 제기한 질문은, 일단 우리가 이유들을 비도구적인 방식으로 인식하게

되면, 계약이나 합의의 상이한 종류가 있을 여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계약은 법적 장치이고, 타당한 계약의 조건이 상이한 법체계에서 상이하게 규정된다. 고티에의 계약관은, 동일한 조건이 확장되는 시장경제를 수반(accomodate)하도록 구체화된 19세기 영미법을 상기시킨다. 그런데, 고티에의 이상화된 협상에 상응하는 것을 구성하도록 계약이 법적으로 규정된 적은 없었다. 어떠한 종류의 약속과 공약도, 계약으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 경제적 협상과 닮은 어떠한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주석 33- 사실 오늘날 극소수의 계약만이 고티에가 말한 의미의 협상이다. 대다수-소비자의 구매-가, 교섭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 확정된 청약의 승작으로 이루어진다. 법적 계약의 기본 요소는 약속 (또는 청약과 승낙)이며, 보통법에서 “약인(consideration)”이라고 불리는 것, 그리고 민법(civil law)에서 “충분한 이유 sufficient cause”라고 불리는 것이다. “약인”은 법학자들에 의해, 약속의 대가로 협상되어지거나 주어진 무언가로 정정 정의되어 왔지만, 계약으로 집행된 약속이면서 예를 들어 자선 계약이나 19세기 이전에 봉인된(under seal) 약속 같이,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 계약이 항상 존재해왔다. “약인”에 대한 법적 정의는 상대적으로 근래의 것이다. 그 원천은 법원이 아니라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였다. 위 기관은, 협상이나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약속을 집행 가능하도록 많은 다른 요소들을 약인으로 취급하였다. 예를 들어,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약속에 의존하는 것.(reliance on a promise or commitment by the promise to third party). 낙약자에 의해 발생한 손실detriment, 청약자가 얻는 이득 benefit 등등. 실제에서는 약인 개념은 모든 약속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것은 아니며 -민법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계약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표현하는 한 방식이었다. Arthur L. Corbin, On Contracts (Minneapolis : West, chap 5. 주석 끝) 더군다나, 배경적인 도덕적 제약은 모든 법적 계약의 요건이다. 계약은 다수의 이유로 인해 “비양심적인 unconscionable”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어떠한 법원도 한 당사자가 그의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동의를 한 계약은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계약 견해의 일부인 최종성(finality)의 요건은, 어떠한 타당한 법적 합의의 요건이었던 적도 없다. (주석 34 - 최종성의 요건은, 롤즈가 기술한 바에 따르면, 계약의 조건이 실천적 추론에서 궁극적이고 결정적이며 다른 모든 고려사항들을 압도한다는 것을 뜻한다(TJ, 135/116-17 rev). 그것이 이유들의 최종성을 일컫기 때문에(refers to) 그것은 어느 법계약과는 달리 사회계약은 면책 요건(excusing condition)이 없음을 의미한다. 주석 끝} 마지막으로, 심지어 우리가, 계약이라는 발상이 이해관심의 근본적인 상충과 상호 배려의 결여를 함축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롤즈의 견해에서의 사회계약에 어떤 종류들이 있을지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든 합의가 경제적 협상과 같은 것은 아니다.

40 우선, 사람들의 집단이 모두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참여하길 원하는 합동 행위를 하기로 (joint activity) 동의하는 것은 완전히 이치에 닿는다. (예를 들어, 내일 농구 경기를 하는 것). 각자는 그 자신의 말에 의해 확약을 한 것이며(commit himself) 이로써 누군가 나중에 그의 마음을 바꿀 가능성을 낮추게 된다. 우리가 스스로를 그런 우애적인 합의에 구속되기 위해 활용하는 다른 수단들도 있다. 결혼의 합의나, 동일한 종교 결사의 성원에 의한 합동 약속에 참여하여 미래의 가능한 선택지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정한 관행이나 제도에 진입 (setting into motion)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금, 합의는 본질적으로 상충하는 이해관심들 사이의 타협이 아니다. 대신, 그것은 어떤 공유된 목적이나 그의 특정한 목적의 고유한 추구에 규제적이기를 각자가 바라는 상호 작용의 이상적인 양식을 표현한다. 당사자들은 이

보유된 규범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의존한다. 합의의 목적은 의견 불일치나 충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 의견불일치나 충돌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렇기 보다는 당사자들이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 결사의 공유된 규범과 목적으로부터 이탈하지 못하게 미래를 묶어두려는 (tie down) 것이다. 이 합의들은 합리적 사전 약속 (precommitment)라는 발상에 가깝다. (Jon Elster, Ulysses and the Siren, rev,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chap 2, esp 37-47) 광범위한 준수가 없이는 결사의 성원들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여러 사람들 사이의 합동 사전 약속을 포함한다는 점만을 빼놓고는 말이다

41 일반적인 사전약속은, 사회계약 전통 이론에서 자연권 이론 내에서 작동하는 종류의 사회계약을 가장 잘 표현한다. 로크, 그리고 때때로 루소는, 그들이 합의를 (“계약”contract이 아니라) “사회 계약social compact”(역주 - compact는 민사상 계약보다는 협정이라는 뜻에 더 가까움)라고 불렀을 때 이 발상을 표현한 것으로 독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전 약속이라는 발상은, 집단적 합의가 롤즈의 견해에서 하는 역할의 중요한 방식을 내비친다(indicate).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간은 모두, 그들의 다양한 목적과 세계관에 더하여, 다른 이들과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의 자아관을 표현하는 공적으로 정당화 가능한 조건에서 협동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사회적 이해관심(그들의 정의감)을 갖고 있다. (cf, TJ, 561/ 491 rev) 이 이해관심은 사회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개인에 의해서는 달성될 수 없고 활동의 조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각 개인들이 동일한 대상, 정의로운 제도라는 배경을 욕구하는 점에서 그것은 공유된 것이다.

42 이 공유된 사회적 이해관심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상호 스스로, 자아관에 적합하고 제도의 설계와 그들의 개인적 목적 추구를 규제하는 원칙들에 대한 사전 약속을 하여, 그들의 목적을 자유롭게 추구하며 공적 이유들로 인정될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평등한 존재로의 지위에 약속하며 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의존한다. 그 원칙들은, 그들의 평등한 지위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동에 대한 근본적 이해관심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창출하고 유지한다. 이 원칙들이 공유된 사회적 이해관심에 답하기 때문에 그 원칙들은 (홉스주의적 견해와는 달리) 타협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이들의 최선의 대응이다. 홉스주의적 견해를 몹시 괴롭히는(bedevil) 통상적인 준수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43 이 원칙들에 스스로를 헌신하면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은, 개인적인 것이건 집단적인 것이건 모든 선택 수준에서 미래의 결정에 일정한 제약을 스스로 기꺼이 부과하게 된다. 이 사전약속은 모든 이에 의해 이루어지고 모든 이에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이다. 그것은 각자가, 정의로운 제도의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스스로를 그의 결정에 묶어둘 수 있도록 다른 이들에게 의존한다. 그리고 그것은 상호적인데, 각자가 그의 동의를, 다른 이들도 동의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주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각 시민이 정의에 관한 그의 기본적 이해관심을 실현시키는 데 필수적인 활동의 가정은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이 특성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준다.

44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아니라 민주적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 일반적인 사전약속을

한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정의와 평등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 관심도 이해관심으로 동기가 부여된 상태에서 선택을 한다. 여기서 “공약의 부담”에 근거한 롤즈의 논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TJ, 45/25-26 rev, 176-77/ 153-154 rev) 당사자들이 스스로를 자유로우며 그들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각자는 자기 자신을 자아의 미래의 요구에 책임을 지는 존재로 이해한다. (TJ, 422-23/ 37 rev) 각자는 그가 다른 이들에 의해 그가 내린 결정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알며, 따라서 각자는 그가 알고 보니까 가장 최악의 결과를 선택한 것이 되어도 자신을 자책하지 않는 원칙을 공약하게 된다. 당사자들에 의한 평등한 시민권을 보장하고 각자가 그 자신의 선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원칙의 공약은, 사회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사전 약속에 상응한다.

45 그런데, 롤즈는 정말로,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에 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무지의 베일 때문에 Jean Hampton이 이야기하듯이 “원초적 입장에는 한 명 이상의 당사자를 설정할 아무런 이론적 이유가 없다”(주석 38). 롤즈가 합의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의 이유는, 공리주의와의 대조를 위해서다. (TJ, sec 30을 보라) 원초적 입장은, 이상적 관망자 이론처럼 설정된 것이 아니다. 이상적 관망자 이론에서는 한 명의 판단자가 모든 이들의 완전한 지식을 갖췄지만 모든 이들의 이해관심을 무사공평하게 대변하고 동정적으로 동일시하는 고유의 정체성을 갖는다. {주석 39- 고티에의 “아르키메데스적 점”에서의 자신의 입장을 상이한 비계약론적 논변은 비록 롤즈의 원초적 입장 같은 이해관심을 갖춘 선택을 포함하면서도 이상적 관망자 이론도 닮아 있다. 모든 이들의 선호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는 않는 단일한 행위자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말이다. 이 닮음은, 공리주의와 고티에의 계약 견해 둘 다, 개인의 욕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차이점은 고티에는 총효용을 거부한다는 점인데, 이것은 그의 이상적 행위자의 선택이 동정적이라기보다는 사리적인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 이 관점에 포함된 이해관심의 융합(conflation)에 반대하여, 그들 자신의 이해관심만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의 합의는 개인의 차이(distinctness)를 강조하고 그들의 선택의 다위성과 공약불가능성을 강조한다. 더 중요한 점은, 계약 여건은 롤즈의 공약의 부담 논변에 핵심적이라는 것이다. 원칙을 선택하는 당사자가 한명 뿐이라면, 스스로를 공약에 묶어두게 되는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합의는, 개인적 선택과는 달리, 각자가 그의 결정에 대하여 다른 이들에 의해 책임을 지고 그리하여 합의된 원칙의 연속성과 변경불가능성(irrevocability)을 보장하는 공동 과업(joint undertaking)을 합의한다. 주석 39 끝}

46 아마도 햄프턴의 반론에 대한 최선의 대답은,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공적 정의의 원칙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고안되었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원초적 입장의 가상적 선택은, 모든 이들이 그들의 특수한 상황이 무엇이건 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협동의 조건과 공적 정당화의 규준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려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이라는 맥락에서만 이치에 닿는다. {주석41-Rawls, "Reply to Alexander and Musgrav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8 (1974): 651을 비교하라. 그곳에서 롤즈는 “원초적 입장에서 계약 개념에 호소하는 이유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특성과 계약 개념의 상응에 놓여 있다”고 한다. 질서정연한 사회는 부분적으로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이며, 다른 이들도 그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아는 사회로 정의된다. 주석 끝} 무지의 베일은, 그저 기본적인 계약론적 발상의 확장으로 설정된 것이다. 그것은

기본구조에 대한 합의에서 도덕적 인간의 근본적인 평등에 상응한다. 당사자들이 그 조건에 의해 동일한(symmetrically)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롤즈는 그의 이론의 주된 발상을 검토하기(go thorough) 위해서, 구별되는 개인들이 합의에 이른다는 발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주석 42- 햄프톤은 당사자들이 그들의 모든 속성에서 완전히 동일하므로 구별불가능성에 대한 콰인Quine의 규명 원칙에 따라 우리는 구별불가능한 당사자들을 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Hampton, "Contracts and Choices", 334) 그러나 당사자들은 모두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들은 상이한 선관을 가진다) 대신에 그들은 그들 자신에 대하여 다양한 정의의 원칙에 의하여 구조화되는 사회 제도 하의 그들의 확률에 대한 증거를 주는 일반적 속성을 알지 못한다는 동일한 속성만을 공유한다. 주석 끝}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비록 롤즈는 이것조차 부인하지만) (주석43- 롤즈의 부인은, 합의될 수 있는 것들의 집합은 합리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것들의 집합에 포함되고 전자는 후자보다 작다는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 주석 끝),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는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한 명의 개인이 할 선택과 동일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 선택을 이런 방식으로 기술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이 기술은, 원초적 입장의 선택 여건을 잘못 표현한다. 롤즈가 원초적 입장을 설정한 방식에서 이 기술을 도출할 어떠한 방도도 없다. {주석 44- 햄프톤은 또한, 계약이 요청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 장치는 롤즈가 필요로 하는 변경불가능한 공약을 산출하기에는 지나치게 약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계약은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면 언제나 변경가능(revocable)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당사자들은 그들이 진입하는 사회에서 합의의 변경(revocation)의 가능성을 고려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여 그로써 두 원칙을 위한 논변을 추론하는 방식을 바꾸고 위험에 빠트릴지도 모른다. (Hampton, "Contracts and Choices", 331-32) 그러나 롤즈의 논변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리에서가 아니라 정의감에서 합의를 강제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TJ, 145/125 rev) 이 도덕적 동기 부여는, 그들이 합의를 취소하고(revoke) 재교섭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매우 낮은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설사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한다고 하여도, 계약의 변경(revocation)이나 “철회”(rescission)는 별개의 계약이다. (Corbin, On Contracts, secs. 236-37..) 그리고 그들이 기본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롤즈의 당사자들 사이의 어떠한 철회recission나 재교섭도 무지의 베일 뒤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사자들이 원초적 합의에서, 이후 철회recission나 재교섭을 하리라는 희망에서 위험을 감수한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기각시키게 된다. 마지막으로 만일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롤즈는, 합의되는 원칙들이 영구적이며perpetual 수정불가능하며 당사자들은 이 점을 안다고 명기stipulate한다. 이 상정은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정의의 원칙이 합의의 결과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의적이지 않다. 정의의 도덕적 원칙이 영구적이고 수정불가능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적합하다. 주석 44 끝}

47 요약하자면, 우리가 이유들을, 합의의 공적 기초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사회적 역할을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면(conceive of) 사회적 합의는, 상이한 선관을 가진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적 시민들 사이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는 원칙을 확인(ascertain)하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 된다. 그리고 이 절차는, 계약적 협상(bargain)은 아니지만, 제도의 구조와 공적 이유들의 체계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의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기로 하는 그들의 공유된 사전 약속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합의다. 원초적 입장에서부터의 이해관심에 의한 합의(Interested agreement)는 이 상황을 모델화한다.

IV. 사회적 합의와 실천적 정당화.

48 우리는 사회계약이 롤즈의 정의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원초적 입장에서의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검토해보았다. 이제, 합의가 그 역할을 하는 두 번째 방식을 검토해 보자. 이것은 롤즈의 견해에서 세 번째 관점, 즉 민주적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우리의 관점에 합의되어 있다. (주석 45- 이 세 상이한 관점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CP, 321-21을 보라)

49 롤즈는 정치철학의 목적을 실천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정치 사회적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공유된 공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정의관을 규명하는 것.” 그것은 모두가 확인하고 받아들이며 공적 추론과 안정적인 사회적 협동을 위한 기초로 기능할 수 있는 문화 내에서 합의의 기초를 자리매김하는 과업이다. 정치관의 실천적인 목적은, “이론적인 목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즉 진리와는 대조되어야 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스스로를 진리인 정의관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사이의 숙지되고 기꺼이 하게 되는 정치적 합의의 기초로 기능하는 것이다.” (JF, 230) 이것은 롤즈가 객관성이나 진리에 흥미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명백히도 롤즈는 그의 이론과 당사자가 가정한 일반적 사실들이 참이라고 생각한다. [TJ, 547/ 481 rev]) 그렇기 보다는, 실천적 탐구의 주된 대상 대 이론적 탐구의 주된 대상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롤즈의 원칙이 진리에 대한 형이상학적 설명을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참이거나 참이 될 수 있는가는 롤즈가 다루지 않는 별개의 쟁점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민주주의에서 그것의 실천적 목적을 달성하려면(JF, 230) “진리의 문제의 실재론과 주관주의 사이의 논쟁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논지는 자유주의의 롤즈 버전에 핵심적이며, 그의 것이 사회계약론이라는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핵심적이다.

50 정치관의 실천적 목적은 그 자체로 사회계약의 어떠한 형태도 합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적 권위, 좋은 이윤르에 대한 자명한 진리에 대해 호소하는 것이 공적 정당화와 합의의 기초를 제공하는 사회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cf, CP, 343) 롤즈의 논지는 그러한 호소가 민주주의에서는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진리, 객관성 등등의 성격과 기반에 대한 상이한 경쟁하는 철학적 관념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공적 추론과 합의의 기초는 그러한 전제들에 의존하는 정의관에 의하여는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회적 합의라는 발상이 들어온다. 그러한 발상은, 롤즈가 민주적 사회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았던, 내가 “실천적 정당화관”이라 부를 것에 합의되어 왔다.

51 정당화가 (이론적인 것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실천적이기 위해서는, 그것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그것은 실천적인 목적을 가져야만 한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발하여진 것으로서(addressed to) 그것은, 공적 정당화와 합의의 기초로써 모두가 받아들이고 확인할 수 있는 원칙을 산출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롤즈는 이것은 원칙의 “사회적 역할”[CP, 305] 또는 “공적 역할” [CP, 426-27, 5-6]이라고 부른다.)

2 그것은 실천적 기초를 가져야만 한다. 그것은 그 문화에서 공적 이유들로 간주되는 고려 사항으로부터 진행해나가야 하며, 그래서 모두가 동의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전제와 추론의 방식에 의존해야 한다. (TJ, sec87; CP. 429) 정의에 관한 우리의 “숙고된 도덕적 확신”은, 그러한 전제들 중에서 주된 것이다.

3 그것은 동기 부여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실천적 정당화는 문화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제도를 서로에게 정당화하는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가정한다. (“자유롭고 강제되지 않는 합의에 대한 욕구” [JF, 23; CP. 306]) - 더 일반적으로, 그들이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에서 다른 이들과 기꺼이 협동하려고 하는 것(정의감)) (주석 47- 롤즈는 정의감은 “개인과 집단의 욕구 측면에서, 그들의 선을 모든 이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간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에 의하여 설명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증진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함의한다”고 말한다. (Rawls, "Social Unity and Primary Goods." in Utilitarianism and Beyond, 183)

4 그것은 도덕적 정합성을 보여야 (exhibit) 한다: 그것에 의해 산출된 원칙들은, 모든 일반성 수준에서의 우리의 적절한 반성과 대안적 견해들을 검토해보고 나서, 숙고된 도덕적 확신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이 원칙들과 우리의 확신은 하나의 정합적인 구조로 서로 들어맞아야 한다. (롤즈가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반성적 균형”이라고 부른 것. [CP. 321])

52 이 조건들은, 롤즈가 정의관을 검토하고 있는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계약론적이라는 의미를 규명해준다. 이 요건들 중 어느 것도 그 자체로는 계약론적 정당화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증해주지 않는다. 요건 2가 충족되었다는 단순한 사실-우리가 특정한 지침과 추론의 방법에 합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정당화해주지 않는다. 계약론은 관행주의 (conventionalism)가 아니다. 그리하여 요건 4의 충족-반성적 평형에의 도달-이 중요하게 된다.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는 그의 선관과 그의 철학적 종교적 견해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도덕적 확신과 발상의 평형을 달성하려고 하는 단일한 개인을 상상할 지도 모르겠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통적인 철학적 논변을 포괄적인 도덕이론으로 해석할 지도 모르겠다.) 비록 그가 그것들을 모든 이들에게 권위를 갖는 것으로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개인적 견해를 공유하지 않는 이들은 이 모든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롤즈는 반성적 평형을 더 공적인 방식으로, 모두가 지지할 수 있는 원칙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적합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요건 1이 중요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숙고된 확신에만 의존하며(요건2) 그리하여, 우리의 선관이나 형이상학적 견해에 특유한 숙고된 신념들은 배제한다. 반성적 평형은 그렇다면 “일반적”이다. 모든 이들은 동일한 관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53 롤즈의 관념은, 그것이 우리가 공통으로 견지하며 우리에게 공적 이유로 기능할 수 있는 숙고와 확신과 신념에 반성적으로 정합적인(cohere with) 정당화와 합의의 공적 기초를 제공하는 원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계약론적이다. 그것은, 공적 이성을 통한 화해 (reconciliation_에 의하여 도달된 상이한 철학적 종교적 도덕적 견해의 상호적인 수용 (mutual accomodation)이라는 의미에서 합의다. (JF, 230) 이 화해는 특정한 고려사항들-

우리 모두가 합의할 수 없는 개인의 특정한 세계관으로부터 도출되는 고려사항들-은 논변으로서나 공적 주장의 기초로서 제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 이해에 의존한다. 원초적 입장과 롤즈 견해의 다른 요소들은 이 상황을 모형화한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실제로 서로에게 우리의 사회 제도를 정당화 하게 되는 정당화의 기반 말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결과하는 정의관은 이 기반(bases)을 정당화를 위해 짜놓게 된다. 그 자체로 그것은 그 관념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이유만이-실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들만이- 헌법의 기본 요건에 대한 논변에서 이유로 간주되는 곳에서 공적 숙고의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 (As such, it attempts to give standards for public deliberation where only the reasons specified by that conception - those that can be justified practically- count as reasons in arguments on constitutional essentials.)

54 롤즈의 정의관이 표명하는 합의나 화해는 홉스주의적인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상충하는 견해들 사이의 협상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주어진 목적과 상충하는 세계관으로부터 출발하여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것은 공유된 정치적 확신으로부터 작업해 나가며, 그들이 수렴하게 되는 지점에서의 개인들의 상이한 도덕적 견해에 들어맞게 되는 것이다. (happens to meet) {롤즈의 “중첩적 합의”(PL, lect, IV)} 그것은 그렇다면 개인에게 그의 기본적 확신을 타협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일 그것이 그러한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그 개인이 받아들이고 의존하는 것과 양립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요건 3, 동기 부여의 요구사항이 중요하다. 이 요구사항의 목적은 무엇이 공적 이유로 간주되는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칙에 따라 행위하여 정치관의 실천적 목적이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특정한 선관에 효과적으로 독립적인 공유된 정의감을 갖고 있다는 롤즈의 가정에 비추어, 홉스주의적인 이론에서처럼 시민들이 그 여건이 허락한다면, 다른 이들을 희생하여 그리고 정의를 이탈하여 그들의 목표를 추구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는 그런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

55 그가 명시적으로, 인식론적 기준과 형이상학적 기준에 따른 진리와 객관성에 대한 주장을 회피하기 때문에, 롤즈의 실천적 정당화는 다음과 같은 반론에 열려 있다. 즉, 그것은 실제로는 정당화가 아니라 한 정치문화에 깔려 있는 개념과 원칙을 통합하는 일종의 복합적인 설명 방식이라는 반론 말이다. 그러나 롤즈가 그의 견해의 칸트적 특성에 기초하여 그의 원칙을 실천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으로 특징지우는 것처럼 보이는 더 강한 의미가 존재한다. 이제 롤즈의 관념에 내재적인 관점으로 돌아가서, 사회적 합의가 자율성과 객관성의 실천적 관점을 정의함에 있어 수행하는 역할을 살펴보자.

V. 이성, 자율성 그리고 합의

56 홉스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자연상태의 목적은, 현존하는 사회 질서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고티에의 관점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이들이 평가의 필요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자연상태를 전제로 삼아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전적인 욕구에서의 닳으로부터 그 견해를 벗어나게 해주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특정한 자연적 경향 및 성향(inclinations)에서 갖고 있는 행위자 중심적 이유의 기초가 차지하는 위치를 바꾸어 놓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현존하

는 사회 질서와 자연적 성향 이외의 무언가에서 조리정연한(reasoned) 평가의 기초를 찾다고 해보자. 칸트를 따라 롤즈는 우리의 실천적 추론 능력에 호소한다.

57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간의 도덕적 능력은 정의의 문제에 적용되는 실천적 추론을 위한 두 개의 별개의 능력이다. 그 도덕적 능력은 (a) “효과적인 정의감의 능력, 즉, 정의의 원칙을 적용하고 (그것을 단순히 따라서가 아니라) 그에 근거하여 행위하는 능력과 (b) “선관을 형성하고 수정하며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능력” (CP, 312)이다.

38 이것을 롤즈는 “행정적인(executive)” 능력이라고 한다. (CP, 320) (어떤 이는 “사법적인”이라는 말을 덧붙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합당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차용하여 그들의 목적 추구를 규제하는 일과 정당화하는 일을 모두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관심사는 합당한 원칙과 그것이 사회질서와 맺는 연결관계다. 칸트적 구성주의와 온전한 자율성이 여기서 들어온다. 그것은 도덕적 능력이 행정적일 뿐 아니라, 집단적으로 입법적이기도 하다는 발상을 발전시킨다.

59 구성주의라는 발상은 롤즈 이론의 두 수준에서 작동한다. 첫째, 그것은 가장 일반적인 정당화 수준인, 반성적 평형에서 작동한다. 우리가 합의하는 특정한 숙고된 확신으로부터 롤즈는, 민주주의에서 공적 정당화의 기초로 가장 잘 기능할 수 있는 정의관을 “구성한다”. 여기서 구성의 개념은 언어적이거나 자명한 도덕 직관에 대한 호소와는 대조되는 의미를 얻는다. 그것들이 언어에 함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나 선제하는 도덕 질서의 정확한 보고라거나 하는 이유에서 특정한 숙고된 확신을 제1원칙의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대신, 롤즈는 정의에 대한 우리의 공유된 확신 (우리가 공적 이유로 기대는 것)에 가장 정합적으로 부합하는 원칙들(best cohere with)을 찾으려고 한다. 그 확신들을 수정하고 필요하다면 규칙에 어긋나는 것들을 버려가면서 말이다. 다른 도덕관들은 이런 의미에서 구성주의자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이 이 정당화 방법에 근거하는 한 말이다. (주석 50 - 이러한 의미의 구성에 대한 논의로는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159-68 을 보라)

60 “칸트적 구성주의”는 이 구성주의 정당화 모델 내에서 작동하는 더 전문화된 개념이다. 왜 우리가 우리의 숙고된 확신의 일부를 규칙에 어긋나는 것으로(recalcitrant) 생각하게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그것은 우리의 확신과 가장 정합적인 원칙들은 의문스러운 문화적 우연이 아니라, 실천적 추론을 원나 우리의 능력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의미에서 객관적이다. 이 능력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치관을 포함한 우리의 숙고된 확신 중 많은 것에 깔려 있다고 롤즈는 추정한다. (JF, 233; TJ, sec 77) 롤즈는 이 자아관을, 이상화, 즉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간에 대한 “모델관”을 가지고 포착하려고 한다. 우리의 첫째의 의미로 구성하기 위하여 롤즈는, 자아관 위에 모형화된 사회세계와 자율보고 평등한 도덕적 인간의 실천적 능력을 구성한다. 이 두번째 종류의 구성의 목적은 칸트의 수수께끼 같은(enigmatic) 자율성이라는 발상에 그 자체를 위한 원칙을 입법하는 이유로서 내용을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추론과 도덕 원칙 능력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종류의 절차 없이는, 그러한 문구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원초적 입장으로부터의 합의는 이 역할을 수행한다. 그것은 정의의 문제에서 “절차적 해석”이다. (CP, 345-346; TJ 256/226 rev)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합당하면서 합리적인 인간관에 대한 절차적 해석

이다. 이 절차는 도덕적 능력을 “모형화”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선택된 원칙의 내용은 그것들이 발생시키는 이 추론 능력과 인간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CP. 303, 306) 이런 의미에서 도덕 원칙은 이성의 기반 위에서 “구성된다”

61 롤즈가 그의 원칙에 귀속시키는 객관성은 그 원칙이 이 공유된 관점으로부터 의지될 것이고 합의될 것이라는 그의 주장에 기대고 있다. 이 공유된 관점은 그들의 특정한 (주관적인) 목적, 신념, 그리고 관점에서 추상되어 동등한 발판에서 사회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다. (TJ. 516-19/ 452-55 rev) 이 객관성의 관념은 이론적인 것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천적이다. 롤즈의 주장은, 무사공평한 상황에 처하면 우선적이고 독립적인 도덕 질서에 대한 참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명료하고, 왜곡되지 않은 관점을 모두 갖게 된다는 것이 아니다. 구성주의에서 롤즈는, 인간의 추론에 선재하는 우리의 도덕판단이 참이게 하는 어떠한 도덕질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롤즈가, 도덕적 사실이나 원칙의 우선적 질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형이상학적인 주장은 롤즈의 실천적인 목적과 상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보다는 그것은 만일 그러한 질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민주적 시민으로서 그것을 따르게끔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특정한 원칙들이 참이기 때문은 아님을 의미한다. 우리를 시민으로서 그 원칙들에 헌신케 하는 것은 그 원칙들이 민주적 사회의 여건에서 우리의 실천적 추론 능력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best accord with)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 주장을 숙지시키는 객관성이라는 관념은 실천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그 원칙에 동의하게 되는 공유된 관점은, 우리에게 우선하는 도덕적 질서에 특권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고안된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민주적 관념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천적 추론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도덕적 능력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62 그러나 도덕 능력, 자율성,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관계는 무엇인가? 칸트에서처럼 한 명의 개인의 이상적인 선택 대신에 “그 자체로 원칙에 부여하는 이유”에 대한 절차적 표현은 집단적으로 인식되어야 하는가? 어떤 이는 합의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협동적인, 우리를 위한 정의의 원칙의 고안의 의미에서 “자율성”을 강조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도덕 원칙은, 실정법과는 달리, 집단에 의해서건 개인에 의해서건 입법되거나 선택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자율성”이 그러한 원칙이 선택되거나 입법된다는 점을 함의하지도 않는다. 칸트와 롤즈 양자 모두에게서 자율성은, 합당하면서 합리적인 인간관을 참조하여 도덕 원칙을 정당화하는 일을 포함하며, 여기서 원칙들의 내용은 그들의 특정한 목적, 천성적인(innate) 심리적 경향 또는 사전적인 도덕 질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개인들의 추론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는 도덕 원칙을 선택함으로써가 아니라, 합당하고 합리적인 개인들이 이 추론 능력에 따라 모형화된 공유된 관점으로부터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합의할 원칙으로부터 진행하고 그에 따라 우리의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63 그러나 비록 우리가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나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본 사회 제도들을 고안(devise)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법과 사회적 법적 확신의 기꺼운(willing) 수용을 통해, 헌법, 경제, 재산 등등이 어떻게 고안되고 하나의 사회제도로 함께 들어맞게 되는지를 협동적으로 결정한다. 여기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이 들어온

다. (comes in) 이 기본제도들은 우리의 최종 목적, 우리의 기본적 애착, 성품, 그리고 우리의 도덕감의 방향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법을 협동적으로 제정하고 지지하며, 이 제도들의 현존하는 규칙들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면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간이며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 이유로 간주되는 고려사항의 종류에 심층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본적인 사회제도를 협동적으로 고안하고 유지하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우리 자신을 형성하며, 실천 이성을 규정한다. (주석 54 - CP. 347을 비교하라. 거기서 롤즈는 도덕적 능력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공유된 공적 문화에 의해 형성되고 발전된다고 한다) 그 질문은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실천적 추론을 위한 우리의 입법 행정 능력을 실현시킬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 제도를 고안하여, 우리의 성품과 최종 목적에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에게 타율성의 상태에 우리를 유지시켜 줄 욕구와 성품 상태를 창출하는 제도 또는 비록 우리가 (종종 자기도 모르게 unwittingly) 하지만 그것들을 창출하긴 하지만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힘에의 예속 (subjugation) 상태를 창출하는 제도를 지탱할 것인가 여부다. (or whether we are going to sustain institutions that create in us desires and states of character that keep us in a state of heteronomy or subjugation to forces that, although we (often unwittingly) create them, are beyond our direct control)

64 기본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여기서 갖는 중요성은 세 가지(threefold)다. 첫째, 그것은 실천적 추론의 사회적 성격, 즉 우리가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에서, 공유된 공적 문화, 주되게는 우리가 창출하고 지탱하는 공적 문화에 의해 얼마나 크게 영향 받는지를 강조한다. 이것은, 기본구조에 관하여 우리가 공적 이해를 획득하는 일의 주된 중요성(primary importance)을 설명한다. 그 문제는 우리의 정치적 관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인 관계 (personal relationship) 결사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의 해결(resolution)은 다른 심층적으로 자리잡은 도덕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65 둘째, 합의는 자율성에 필수적인 사회적 조건을 함의한다. 롤즈는, (칸트가 때때로 시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와는 달리) 어떠한 여건 하에서도 우리가 도덕적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특정한 종류의 사회 제도의 배경을 필요로 한다. (cf. CP. 339-40) 현재의 제도를 지탱하기 위하여 협동적 노력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제도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협동적 노력이 필요하다. 온전한 자율성은 공동 노력(joint effort)과 집단적 결정을 전제한다. 그것은 우리가 현존하는 제도를 변경하고 다른 제도를 고안하여 그것들이 우리의 도덕적 능력과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관념에 일치하도록 만들 것을 요구한다.

66 이 두 논점은 사회적 합의의 최종적 중요성을 시사하는 롤즈의 완전한 공지성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full publicity condition) (CP, 324) 다시금 칸트와는 달리, 롤즈는 제1원칙이나 자율적 존재로서 우리 자신에 대한 관념이 개인의 도덕적 의식에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인간관과 그것들의 관계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칙들의 완전한 공지성과 그것들의 정당화는, 자율적인 존재로서 우리 스스로를 인식할고 이해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유로 간주되며, 공적 문화에서 요구의 기초로 간주되는 모든 것들은 온전하게 정당화된다. 어떠한 것도 공적인 시야(public view)로부터 숨겨진 상태로

둘 필요가 없다.

67 이제 고티에로 돌아가보자. 그는 수단에 대한 비판적 반성과 목적에 대한 명료화는 포함하지만 “선택이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이유”는 거부하는 효용극대화의 자율성관을 구체화한다. (MA, 344) 합리적으로 자율적인 존재에 대한 고티에 설명의 중요성(significance)는, 우리 문화의 일부에 잠재된(latent) 인간관과 그들의 사회적 관계를 포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 관계가 모두 계약적 협상에 기초한,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며 소유욕이 많은(acquisitive) 개인들이라는 순수한 자본주의적 이상 말이다. (MA, 318-19) 고티에의 자율적 존재는 궁극적으로 사리에 의해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관하여 어떠한 망상 하에 있지도 않다. 그들은 공적으로 사리를 그들의 사회적 관계와 공적 이유들의 체계에서 근본적인 것으로 확인한다. 고티에의 원칙과 인간관이, 그의 합리적 이기주의자들 사이에서조차도 정당화의 공적 기초로 기능하거나 안정적 사회적 관계를 제공해줄지는 별개의 질문이다. 그렇다고 하여도 고티에는, 우리가 기꺼이(willingly) 지탱하고자 하는 제도로부터 도출되며, 그 제도들에 의해서 특별히 선호되는 (favored) 다수를 위한 공적 정당화의 충분한 기초를 제공해주는 우리의 문화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적 이유들의 기초를 붙잡고 있다.(latched on)

68 두 인간관-롤즈의 온전히 자율적인 민주적 개인과 고티에의 “경제적 인간”의 이상화된 관념- 모두 우리의 기본 제도에 의해 생성된 유형을 표현한다. 이 관념들은 우리의 문화 그리고 아마도 우리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는 근본적인 긴장을 반영한다. 이런저런 도덕적 견해(one or another)의 궁극적인 정당화는 (고티에가 그랬듯이) 어느 이유관과 인간관이 사회과학에서 기대고 있는 모델에 가장 근접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 없다. (MA, 8, 316) 왜냐하면 그 설명은 전적으로 상이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렇기 보다는 실천적인 질문이다. 우리가 가장 가깝게 동일시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되고 싶은 종류의 인간은 무엇인가? - 그 제도와 기본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창출된 무제한적인 소유(acquisition)의 욕구에 의해 궁극적으로 부과되는 개인인가, 그들의 실천적 추론 능력을 실현시키는 것을 돕는 제도를 폐탄화함으로써 그들의 욕구, 성품, 사회적 관계에 책임을 지는 인간인가?

69 나는 이 에세이의 초안에 대하여 유익한 토론과 논평을 해 준 존 롤즈에 감사드린다. 또한 Joshua Choen, John Carriero, R. Jay Wallace 그리고 Philosophy & Public Affairs의 편집자들에게도, 지속적인 수정을 낳았던 많은 가치있는 제안들을 빚졌다. <끝>